

---

2020년도  
정부관리양곡 매출요령

---

2020. 1.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



## 2020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

양곡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 정부양곡 판매가격

구 분	연산 또는 종류	포장단위	판매가격(원)
국 산 쌀	'19년산	40kg(P.P.대)	99,240
		20kg(지대)	50,090
		20kg(P.P.대)	49,970
		10kg(지대)	25,290
	'18년산	40kg(P.P.대)	89,310
		20kg(지대)	45,120
		20kg(P.P.대)	45,000
		10kg(지대)	22,800
수입쌀 (가공용)	단립종	40kg	22,560
	중립종	40kg	21,920
	장립종	40kg	19,640
	합성미	40kg	21,600

\*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kg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하고, 소포장은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P.P.대 350원/20kg, 20kg 지대 470원/20kg, 10kg 지대 480원/10kg, 원단위 절사)

\*\* 판매가격은 시·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상차도 기준

\*\*\* 현미의 경우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

2. 적용지역 : 전국

3.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4. 재검토 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기타

이 고시에 포함된 양곡이라도 수급 여건에 따라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

6.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2019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8-108호)」는 폐지한다.

## 2020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표

### □ 국산쌀

(단위: kg, 원)

연산	포장단위	군·학교	관수용	생계·의료	주거·교육	기초생활	무료급식	가공용
		급식용	(기준가격)	급여수급자	급여수급자	보장시설	단체	
		(기준가격)	(기준가격)	(기준가격의 8%)	(기준가격의 40%)	(기준가격의 50%)	(정액)	(기준가격)
2019	40kg (P.P.대)	99,240	99,240	7,930	39,690	49,620	12,500	99,240
	20kg (지대)	50,090	50,090	4,000	20,000	25,040	6,250	50,090
	20kg (P.P.대)	49,970	49,970	4,000	20,000	24,980	6,250	49,970
	10kg (지대)	25,290	25,290	2,000	10,100	12,640	3,120	25,290
2018	40kg (P.P.대)	89,310	84,840	7,140	35,720	44,650	12,500	89,310
	20kg (지대)	45,120	42,890	3,600	18,040	22,560	6,250	45,120
	20kg (P.P.대)	45,000	42,770	3,600	18,000	22,500	6,250	45,000
	10kg (지대)	22,800	21,690	1,820	9,120	11,400	3,120	22,800

### □ 수입쌀

(단위: kg, 원)

곡종	포장단위	가공용	
		백미	현미
단립종	40kg	22,560	20,300
	20kg	11,710	-
중립종	40kg	21,920	19,720
	20kg	11,390	-
장립종	40kg	19,640	17,670
	20kg	10,250	-
합성미	40kg	21,600	-
	20kg	11,230	-

\* 이 표 이외의 포장단위 가격은 40kg 포장단위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 적용하고, 소포장은 포장비용을 더하여 산출(20kg P.P.대 350원/20kg, 20kg 지대 470원/20kg, 10kg 지대 480원/10kg, 원단위 절사)

\*\* 판매가격은 시·군이 지정하는 정부관리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 문전상차도 기준

\*\*\* 현미의 경우 쌀 가격의 90%로 환산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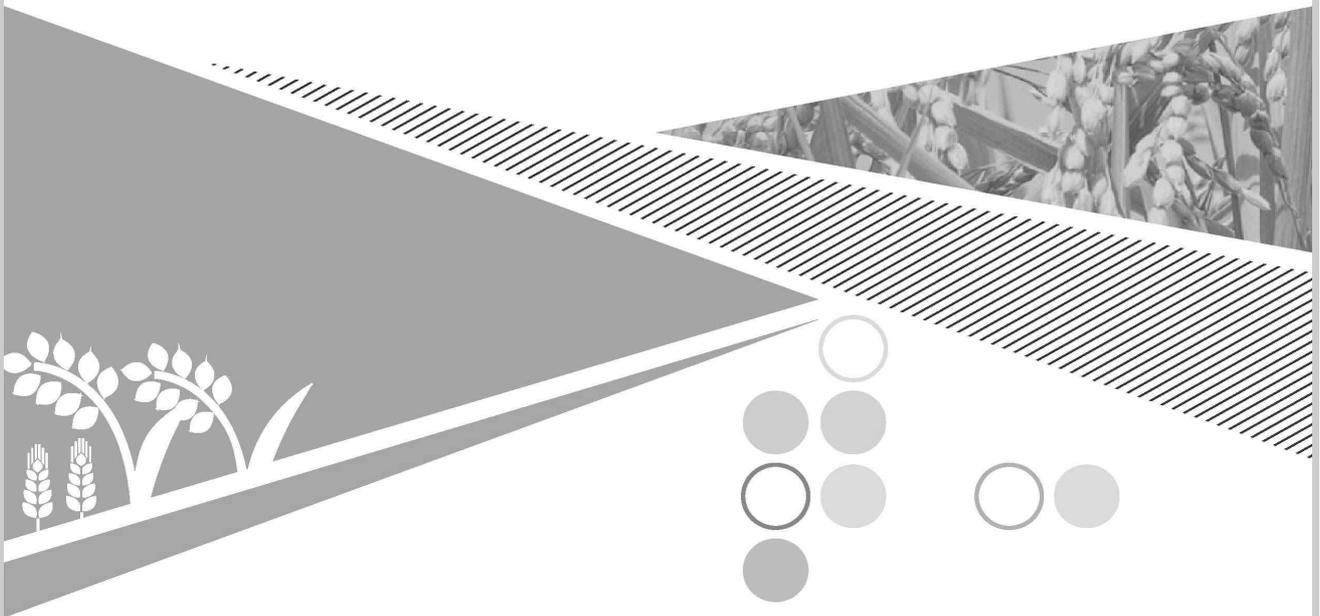
# Contents

I. 군·관수용 .....	1
II. 학교급식용 .....	7
III.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	13
IV. 기초생활보장시설 .....	29
V. 경로당용 .....	37
VI. 무료급식용 .....	49
VII. 구호용(재난·재해시) .....	61
VIII. 가공용 .....	67
IX. 주정용 .....	87





# I. 군·관수용





## 1. 목 적

- 국방부, 경찰청 등 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정부쌀을 공급하여 군인, 경찰 등에 대한 기초식량의 안정적 제공

## 2. 공급대상

- 국방부, 경찰청, 교도소 등 급식을 국가예산으로 운영하는 기관
  - \* 군인·경찰, 교도소 재소자 등

## 3. 판매가격

- ('19년산 일반쌀) 군·관수용 99,240원/40kg, 49,970원/20kg(P.P.대)
- ('18년산 일반쌀) 관수용 84,840원/40kg, 42,770원/20kg(P.P.대)

## 4. 공급절차

### [군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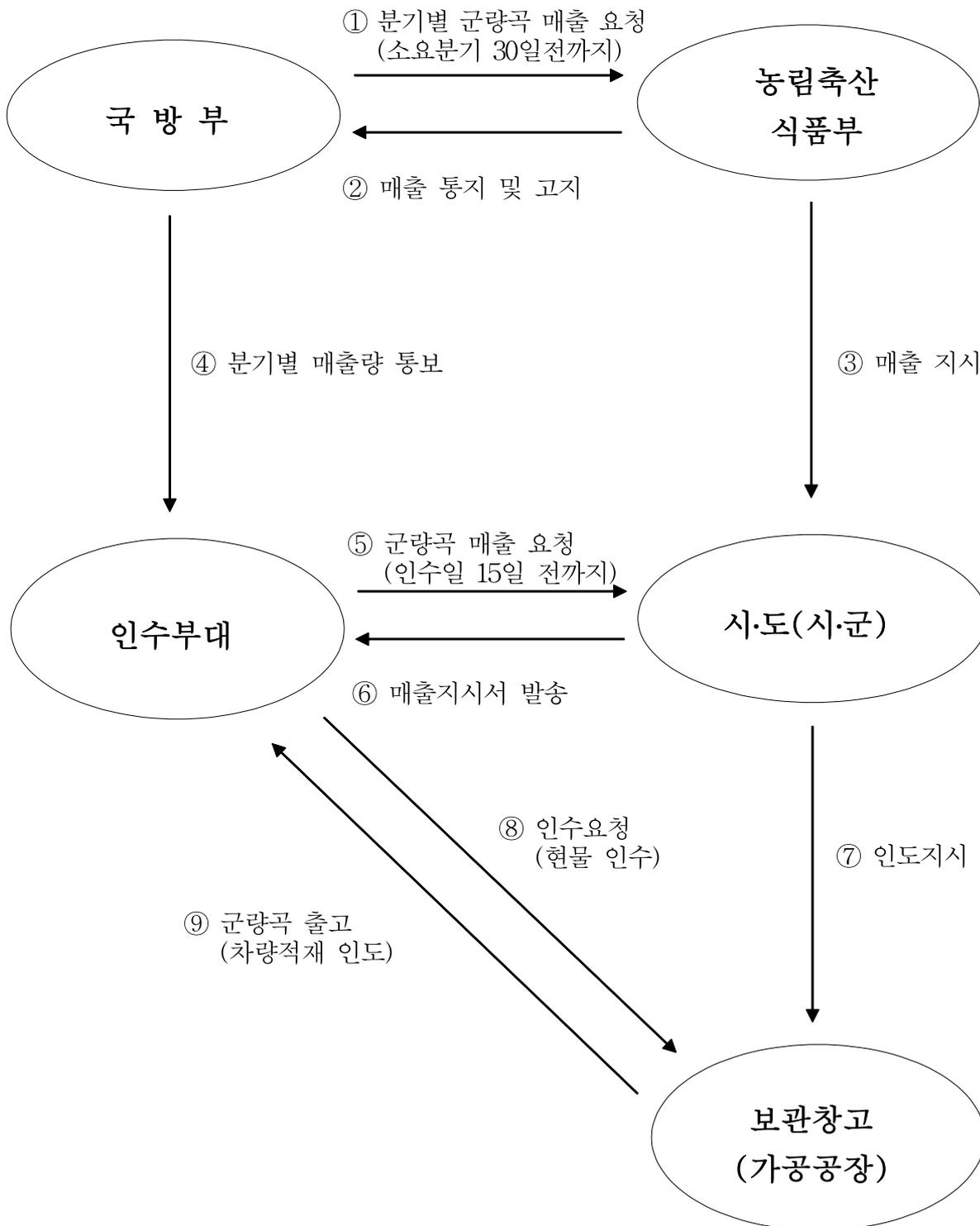
- 군량곡 수급사무 협정에 따라 분기별로 국방부에서 농식품부에 구매 요청
  - 인수부대별·분기별 구매 물량을 소요분기 30일전까지 농식품부로 신청
- 농식품부는 각 인수부대별 분기별 매출계획을 각 시·도에 통보
- 농식품부는 국방부에 매출 통보 및 구매대금 납부고지서 송부
  - 양곡대금은 국방부와 농식품부 간 중앙 징수
- 각 시·도(시·군)에서는 농식품부의 매출물량 범위내로 인수부대에 공급
  - 인수부대는 분기별 배정량 내에서 전월까지 해당 월 인수물량을 지자체에 통보하되 **인수예정일 15일 전까지는 반드시 통보**
- ※ 농식품부 매출지시 물량 이외의 매출 요청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에 보고하여 매출지시를 받은 후 공급

## [관수용]

- 정부쌀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급대상 기관(경찰청, 교도소 등)에서 시·도(시·군)에 정부 쌀 구매 요청
- 시·도(시·군)에서는 공급대상 기관 확인 및 양곡대금 납입 확인 후 매출 지시
  - 공급대상 기관에서는 양곡 대금 납부
- 인수기관별로 시·도(시·군)가 지정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 인수
  - ※ 업무간소화 및 인수기관 편의를 위해 대금납부 고지서 발부, 영수증 제출, 출고지시서 등은 가능한 팩스 송·수신, 새올행정(농촌행정)시스템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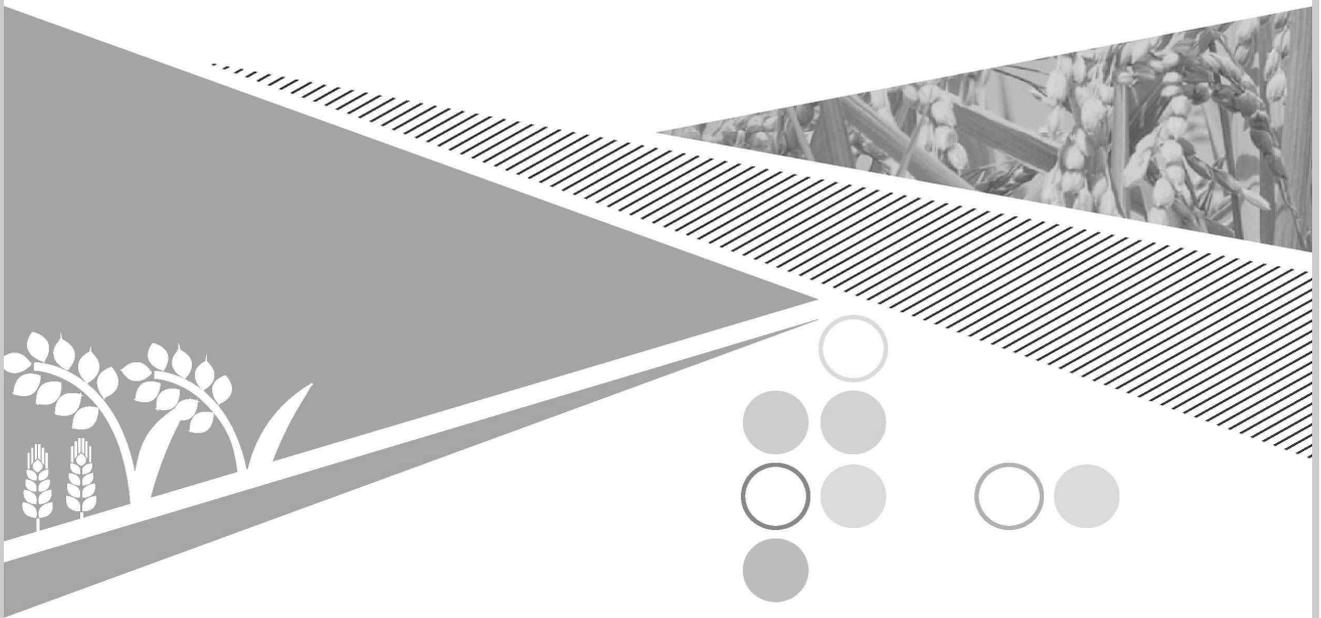
< 별표 >

### 군량곡 공급체계도





## II. 학교급식용





## 1. 목 적

- 학교급식용 정부 쌀 공급을 통하여 쌀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 경감을 도모
- \* 관련문서 : 양정51425-942(2001.11.6) / 양정51425-1036(2001.11.26) / 소득관리과-3341(2006.9.27)

## 2. 공급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으로서,
  - 학교장이 직영하는 급식학교
  - 교내조리 위탁급식학교로서 학교장이 직접 양곡을 구입·관리하고 할인가격 공급만큼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었거나 영양식으로 식단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여 지역교육청 교육장 또는 시·도 교육감이 정부쌀 공급대상 학교로 지정한 학교
  - \* 지정내용은 공문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시·도(시·군) 양곡매출 담당부서에 통보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서,
  - 시·군·구 교육장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유치원 규모에 알맞은 급식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 급식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군·구 교육장이 정부쌀 공급대상으로 지정한 유치원

## 3. 공급연산 및 가격 : '19년산 일반쌀 50,090원/20kg(지대)

## 4. 공급기준

- 1인 1일 1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야간학습 등에 따라 1인 1일 2식으로 정부 쌀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역 교육청에서 지정한 초·중·고등학교의 경우는 1인 2식까지 공급 가능
  - \* 지정내용은 공문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시·도(시·군) 양곡매출 담당부서에 통보
  - 기숙사 설치 학교는 1인 1일 3식 기준 공급

- 공급기준량(하루 1인 1식 기준) : 유치원·초등학교 70g, 중학교 140g, 고등학교 150g
- 농어촌 중·고등학교, 체육학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 범위 내 추가 공급
- 농어촌, 벽지지역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1인1식당 100g 범위 내에서 학교장 신청에 의해 탄력적으로 공급

## 5. 정부쌀 공급(매출)절차

- 정부쌀을 공급받고자 하는 학교(사립유치원 포함)는 정부쌀 공급 신청서를 해당 시·도(시·군)에 **인수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
  - 물량 취소 및 변경은 인수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 \* 인수예정일 7일 이내 취소할 경우 다음 회 정부 쌀 인수 시 기존 신청 시 가공된 쌀이 공급될 수 있음
- 교육청은 시·도(시·군)에 공급대상학교 명단 통보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공급신청서와 공급대상학교임을 확인하고 매출물량을 결정(학생수, 기숙사 설치학교 확인)하고 대금납부 고지서 발부
- 학교장(유치원장)은 대금을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국고취급 은행에 납부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양곡인도(출고) 지시서 발부 및 출고지시
- 학교장은 출고지시서에 의해 지정창고에서 양곡인수
  - ※ 업무간소화를 위해 공급량 신청, 대금납부고지서 발부, 대금납부 영수증 제출, 출고지시서 등은 가능한 새올행정시스템, FAX 송·수신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

## 6. 행정사항

### [시·군·구 교육청]

- 정부 쌀 공급대상 학교(유치원) 지정 및 지정서 발부
- 1인 2식 공급대상 초·중·고등학교의 지정 및 지정 통보

### [시·군]

- 공급대상 학교(유치원) 여부확인 및 공급기준량에 의한 매출물량 결정

### [급식학교(교내 조리위탁 급식학교) 및 유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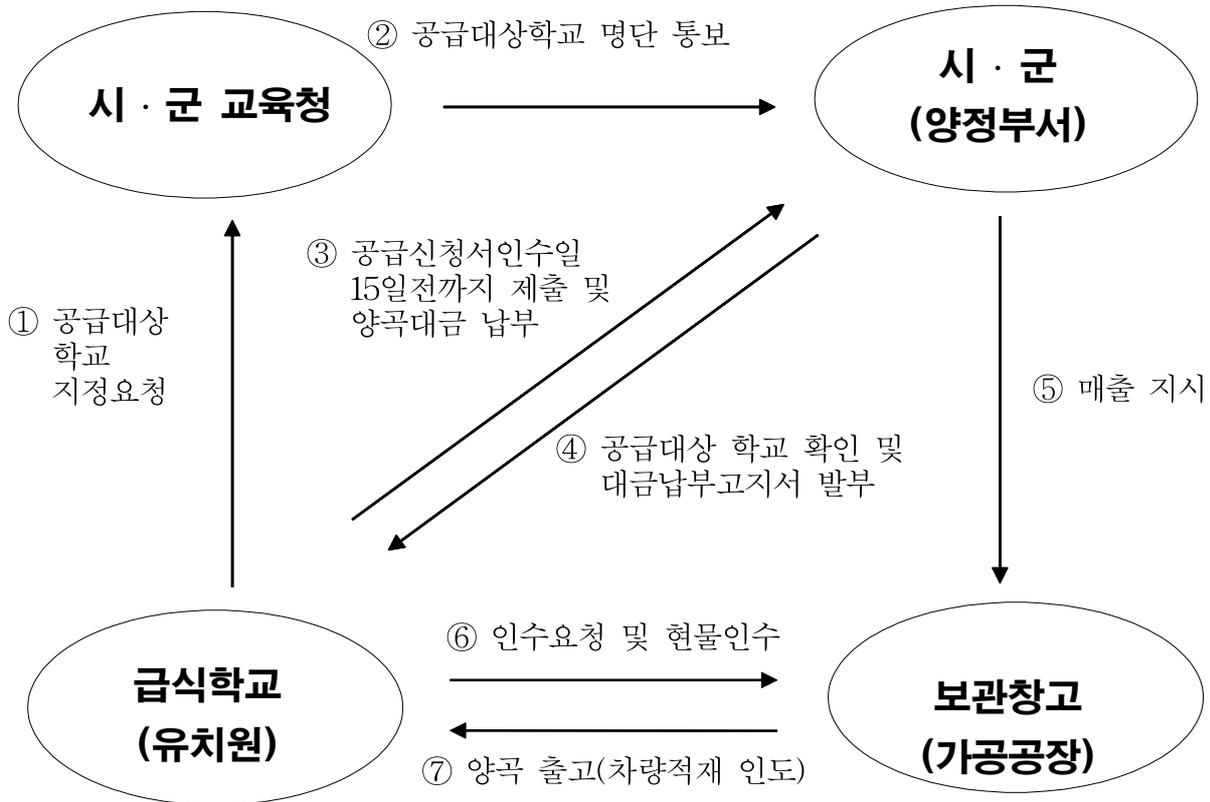
- 양곡수불대장 작성 비치 관리

### [시·군 및 시·군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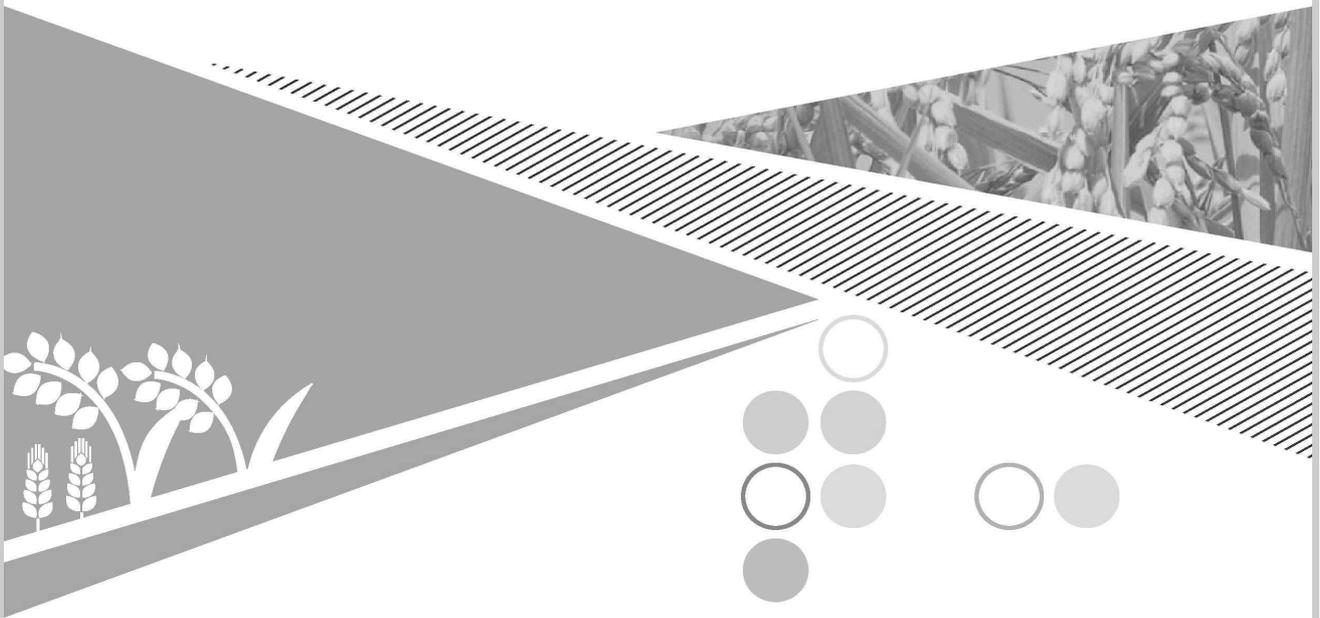
- 월 1회 이상 급식학교(교내 조리위탁 급식학교) 및 유치원에 대해 양곡수불 상황 확인

<별표>

## 학교급식용 공급체계도



# Ⅲ.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 1. 양곡의 용도 : 공공용(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용)

## 2. 공급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한 자

## 3. 공급연산 및 가격

- 공급연산 : 2019년산 일반쌀
- 공급가격
  - 생계 · 의료수급자 2,000원/10kg(지대)
  - 주거 · 교육수급자, 차상위 10,100원/10kg(지대)

## 4. 공급단량

- 공급 단량 : 10kg 지대

## 5. 공급절차

- 정부 쌀을 공급받고자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대상자는 구입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사회복지부서 담당자에게 제출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하여 양정담당 부서에 수요량과 인수예정일 제출(18일까지)
  - 지역별 인수 예정일이 다를 경우 반드시 양정부서에 통보하여 신선한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 ※ 양정담당부서는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송부 : 19일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 부서는 대금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양곡 인도(출고)지시서 발부 및 출고지시
- 택배업체(농식품부와 계약을 체결한 택배업체)는 출고지시서에 의해 지정창고에서 양곡 인수
  - 창고 출고일 후 최단기간 내 민원인에게 배송될 수 있도록 조치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 부서는 택배업체가 지역별 배송기한 이후에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농식품부에 즉시 보고
- ※ 업무간소화를 위해 공급량 신청, 대금납부고지서 발부, 대금납부 영수증 제출, 출고지시서 등은 서울행정시스템, FAX 송·수신 등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

## 6. 민원처리

- 양곡품질 민원 발생 시 양정부서는 해당 민원인에게 공급된 쌀의 도정일, 창고입고일, 창고출고일(택배업체인수일), 민원인이 수령한 일자를 우선 확인
- 창고출고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 후 민원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될 경우 택배관리부서인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통보
  - \* 택배배송기한 : 1차 배송지역은 21일부터 15일 이내, 2차 배송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배송
- 기한 내 배송된 경우 해당 쌀의 품질상태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 조치
  - \* 품질확인이 필요할 경우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협조 요청
  - \* 해당가구가 월 신청물량 이상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 민원인에게 장기보관 시 발생가능한 문제 등을 안내하고, 필요 시 사회복지담당부서에 통보하여 공급 물량을 조정하도록 조치

## 7. 기 타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참고 >> 2020년도 복지용 정부관리양곡 지원 세부 절차

-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 별표1

### 1 제도 개요

#### ①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 정부양곡의 직접 이용을 목적으로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자활근로, 차상위계층 자격확인

#### ② 신청 및 공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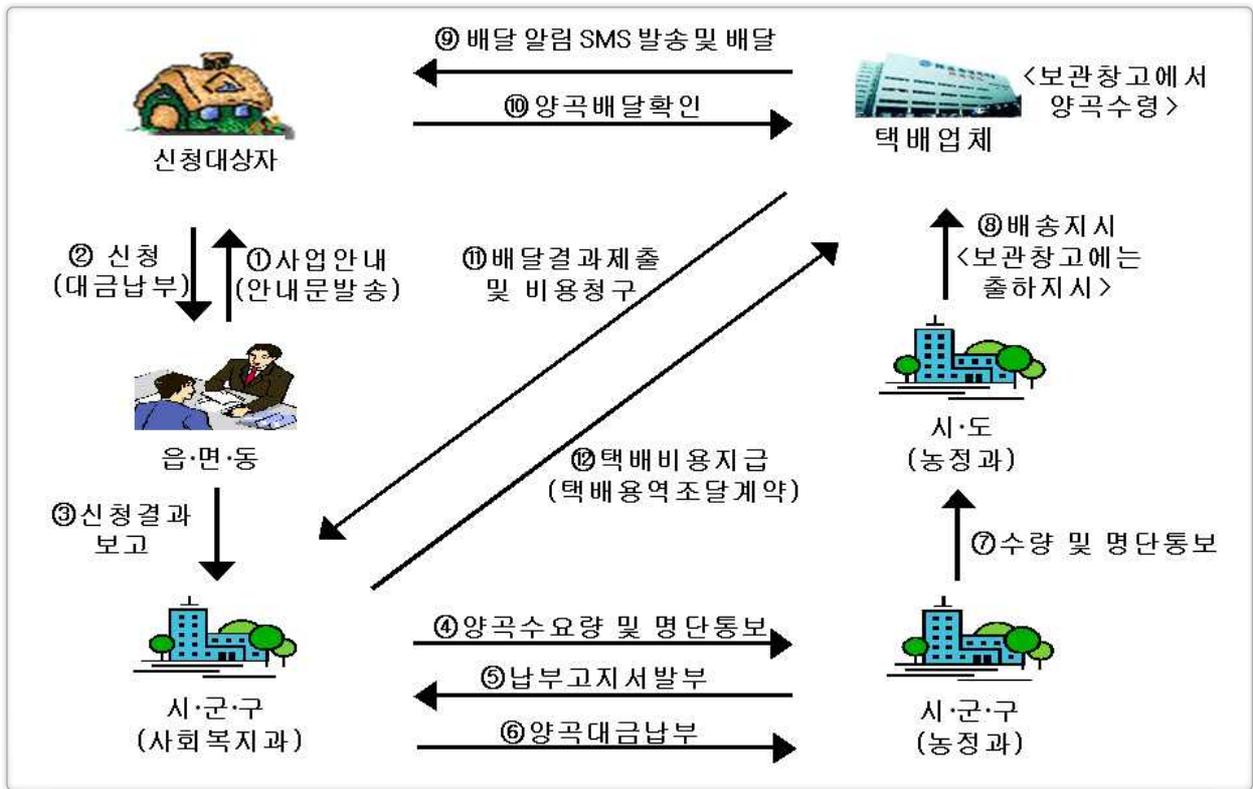
- (신청) 매월 10일까지 신청.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이전일까지 신청 가능
- (공급) 당월 신청분에 대해 지역별로 21일부터 15일 이내 또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해당지역은 22페이지의 ‘지역별 배송일정 현황’ 참고)
  - ※ 2차 배송지역 시·군·구는 배송일정과 관련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송일정 사전 안내 등 노력

#### ③ 공급가격

(단위 : 원)

연산	단량	구 분	양곡대금(개인부담)
신 곡 (‘19년산)	10Kg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2,00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0,100

#### 4 업무처리 프로세스



##### ● 신청접수

-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 신청 안내문 발송
-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및 대장관리
- 신청결과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 제출

##### ● 양곡수요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수요량 양곡담당부서에 통보
- 양곡대금 양곡담당부서에 입금

##### ● 양곡출하 지시

- 양곡담당부서는 양곡출하 지시

##### ● 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양곡인수 후 배달

⑤ 공급 물량

- 양곡신청가구의 가구원수\* 1인당 월 10kg

\* 가구원수 산정 기준 : 보장가구에 속해있는 모든 가구원 수(단, 별도 가구로 보장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별도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원 수)

- 1인 가구 지원대상자가 3개월 이상 장기 입원한 경우, 입원 시부터 퇴원 시까지 담당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양곡구입 제한

⑥ 공급 방식

- 공급 신청지(주민등록상 주소지) 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⑦ 양곡 구매자 유의사항 고지(용도의 사용 금지)

- 공급되는 양곡은 직접 이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 양곡관리법 제9조제4항 및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에 따라 공공용으로 양곡의 용도를 지정
    - \* 지정한 용도 외로 사용·처분(시중유통, 재판매 등)한 사람은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지원된 용도 외로 시중유통, 재판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부정유통 신고센터(1588-8112)에 신고

## 2 지원 실시

### 1 신청접수

- (신청안내) 신청 대상자에게 정부양곡 신청 안내문 발송
  - 신청 및 공급기간, 양곡 대금 및 납부방법, 납부 계좌번호, 양곡의 부정유통(판매)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안내
- (연간수급계획) 기초·차상위계층 대상에 대해 연간수급계획 작성(행복e음)하여 연간 수급대상 관리
- (접수) 매월 10일까지. 다만, 10일 이후라도 급여 생성전까지 접수 가능
  - 대상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신청량, 기타 배달에 필요한 사항
  - 신규 신청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서식1,2)에 기재토록 함
  - 읍·면·동에서는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

#### <관리대장 예시>

(0000년)

성명 (세대주)	가구원수	주소	전화 번호	수요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

- 신청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제출
  - \* 성명, 가구원수,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을 정확하게 기재
- 신청자의 급여액에서 양곡대금(공제액)과 실제지급액을 구분하여 제출
  -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계급여지급예정액, 공제액(수요량에 따라 차이 발생에 유의), 생계 급여지급액을 구분 작성
  - \*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생계급여지급예정액, 정부양곡대금공제액, 생계급여 지급액』을 산출

## 2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

-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 취합 : 17일까지
- (시·도) 농정과에 수요량 및 명단 제출 : 18일까지(성명, 주소, 전화번호, 수요량 등)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송부: 19일까지
- 양곡대금 공제 및 입금
  - (생계급여수급자)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 급여에서 양곡대금 공제 : 19일까지
    - 신청자의 양곡대금을 생계비 예산에서 인출하여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신청서 접수 및 양곡 대금납부\* 확인 : 19일 까지
    - 신청자가 납부한 양곡대금을 농정과 양곡대금 관리계좌에 입금 조치 : 20일까지
    - \* 입금사실을 즉시 농정과에 통보(유선)

### \* 양곡대금 납부방법

(생계급여수급자)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에서 공제

- 단, 자활특례수급자 및 이행급여특례자 등 지급받는 급여액이 개인 부담액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양곡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양곡구입방법을 준용하여 수급자가 현금으로 양곡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구입을 신청한 대상자는 읍·면·동 '별도 계좌 (양곡대금 출납전용)'로 입금하거나 읍·면·동을 통한 현금납부 가능

## 3 양곡 매출 지시 및 배달 의뢰

- 시·군·구 농정과는 양곡매출지시 및 택배회사에 배달의뢰 : 20일
  - \* 시·군·구(시·도) 농정과에서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읍·면·동 사회복지담당부서에 통보

#### 4 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수급가구에 양곡배달 : 21일부터 15일 이내(2차 배송지역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 이내)
- 택배회사는 신청자에게 배달하고 신청자의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제출
-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군·구 사회복지담당부서에 즉시 통보

#### <지역별 배송일정 현황>

구분	지역
1차 배송지역 (162개 시군구)	2차 배송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2차 배송지역 (67개 시군구)	서울(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마포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중구, 서구, 영도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인천(중구, 동구, 강화군), 대전(대덕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경기(동두천시, 안산시 상록구, 고양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여주시, 연천군, 가평군), 강원( <b>속초시</b> , 삼척시, <b>평창군</b> ,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b>인제군</b> ), 충북(단양군), 충남(보령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태안군), 전북(진안군, 장수군), 전남(여수시, 순천시, 화순군, 강진군, 장성군, 완도군, 신안군), 경북(안동시, 영주시, <b>성주군</b> ), 경남(창원시 의창구, 밀양시, 의령군), 제주(서귀포시)

#### 5 민원 처리

- 택배지연 민원 발생 시 읍·면·동에서는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 (02-324-2155)으로 직접 처리 요청 또는 신청자에게 콜센터 번호 안내하고, 이에 대해 양정담당부서에 즉시 통보
  - \* 배송지연건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 등에 대해서는 택배회사에서 집계·보고
- 양곡 배송(수령) 완료 30일 이내에 양곡품질 민원 발생시 읍·면·동에서는 양곡담당부서에 요청하여 즉시 교환 가능하도록 조치
  - \* 단, 양곡 배송(수령) 30일 경과 후라도 보관상 변질 이외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환

### 3 부정수급자 환수 처리

- 소득·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환수 실시
- 양곡지원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에게 정부양곡을 할인지원하는 제도로서, 개별 법령\*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판단되어 보장비용 징수결정시 환수금액에 기준가격과 대상자별 판매가격의 차액을 고지토록 함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 기초 양곡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부정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보장비용 환수시 기준가격과의 차액에 대한 환수여부를 결정하되,
  - 동 대상자가 차상위 양곡지원대상으로 지원 가능한지 검토하여 차상위 양곡지원 대상으로 지원이 가능한 경우 환수 대상에서 제외

### 4 통계 보고

- 정부양곡 지원관련 보고사항
  - 시·군·구청장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의 월별 정부양곡 지원 실적(서식 3호)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장관(식량정책과)에게 다음달 7일까지 보고

<서식 1>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생계급여 수급대상자)**

- 신청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로서 공급가격 이상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공급가격 : 2,000원/10kg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가구원수 1인당 각 10kg 까지 가능)
- 공급방법 : 공급신청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대금지급 : 생계급여에서 차감

신청 내용 (아래 내용 기재하여 제출)

성 명 (세대주)	주 소	가구원수 (세대주 포함)	신청 내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10kg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신청일자 : 20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절 ===== 취 ===== 선 =====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 접수증

성 명 (세대주)	주 소	가구원수 (세대주 포함)	신청 내역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10kg															

신청일자 : 20 . . .  
 담당자 전화번호 : 000) 000-0000

※ 유의사항 :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자(시중유통, 판매 등)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2>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

- 신청대상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것은 아님)
- 공급가격 : 의료급여 수급자(2,000원/10kg),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0,100원/10kg)
- 구입상한량 : **1인당 월 10kg** (가구원수 1인당 각 10kg 까지 가능)
- 공급방법 : 공급신청지(주민등록상 주소지)가구로 택배회사에서 직접 배달
- 대금지급 : ○○동 주민센터 양곡계좌 입금(○○은행 000-0000-00)

신청 내용 (아래 내용 기재하여 제출)

성 명 (세대주)	주 소	가구원수 (세대주 포함)	신 청 내 역		
			월	10kg	금액(원)
		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신청일자 : 20 .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 절 ===== 취 ===== 선 =====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 접수증

성 명 (세대주)	주 소	가구원수 (세대주 포함)	신 청 내 역		
			월	10kg	금액(원)
		명			

신청일자 : 20 . . .  
담당자 전화번호 : 000) 000-0000

※ 유의사항 : 지정한 용도 외로 양곡을 사용·처분한자(시중유통, 판매 등)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3>

2020년 월별 정부양곡 지원실적

1. 총 지원 현황(시도별 작성)

구 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포수	10kg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2. 분야별 지원 현황(시도별 작성)

①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현황

구 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포수	10kg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② 의료급여 수급자

구 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포수	10kg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③ 주거급여 수급자

구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10kg														
포수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④ 교육급여 수급자

구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10kg														
포수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⑤ 차상위계층(한부모 보호대상 가구)

구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10kg														
포수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⑥ 차상위계층(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 가구)

구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10kg														
포수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⑦ 차상위계층(자활사업 참여 차상위 가구)

구 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10kg														
포수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⑧ 차상위계층(장애인수당 수급 가구)

구 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10kg														
포수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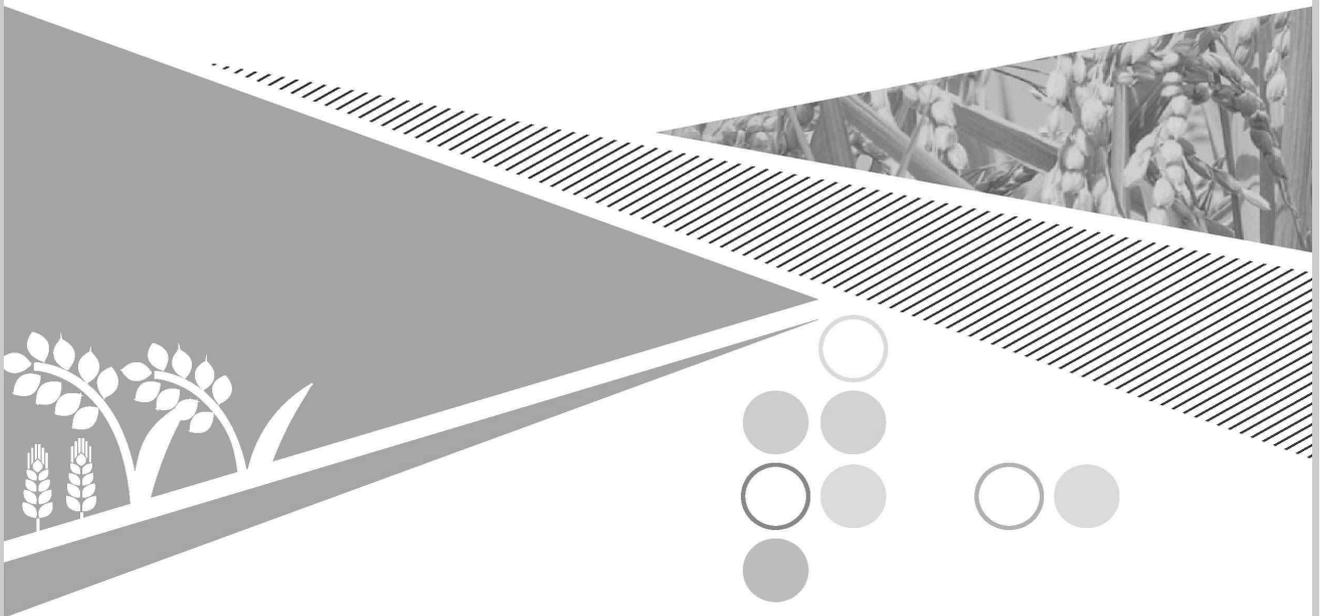
⑨ 차상위계층(장애인 연금 수급 가구)

구 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10kg														
포수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⑩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구 분	집행내역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집행잔액
지원 10kg														
포수 20kg														
집행액														
가구수														
가구원수														

## IV. 기초생활보장시설





## 1. 목 적

- 보장시설수급자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생계보호 강화

\* 관련문서 : 양정 51425-119('03. 2. 17.)

## 2. 공급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급여위탁을 받는 시설  
(관련규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동법 제32조)
- 보장시설 수용인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한함(비수급자 제외)

## 3. 양곡의 용도 : 공공용(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용)

## 4. 공급량 기준

- 시설 수급자 1인 1식당 180g 기준으로 공급

## 5. 공급시기 : 매월

## 6. 공급연산 및 가격

- 공급연산 : 2019년산 일반쌀
- 공급가격(20kg기준, 지대) : 25,040원
- 공급가격은 기준 가격의 50% 할인 공급

## 7. 공급(매출) 절차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사회복지시설은 매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부쌀 공급신청서(서식4) 제출
  - 보장시설의 장은 매월 10일까지 시·군·구 보장시설 담당부서에 신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월별 구입신청서에 대한 확인을 거쳐 매월 20일까지 보장시설(구입물량, 가격, 주소 등)별로 구입물량을 결정하고 대금납부고지서 발부 요청(보장시설 담당부서에서 양정담당부서에 매출요구)
- 대금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은 보장시설은 양곡대금을 지정 국고취급 은행에 납부
  - ※ 세입처리를 할 수 없는 서울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경우는 자치구별로 시(市)의 양정부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금납부 사실 확인 후 양곡인수통지서 및 인도지시서 발부
- 보장시설의 장은 양곡인수 통지서에 의거 지정 창고에서 인수

## 8. 사후관리

- 보장시설의 장은 보장시설 수용인원 현황(서식 5) 및 정부쌀 수불대장(서식 6)을 비치하고 매일 작성 관리
  - 시장·군수·구청장은 월1회 이상 보장시설 급식시설의 정부쌀 사용실태를 점검
- 시장·군수·구청장(양정담당부서)은 보장시설에 대한 월별 정부쌀 공급량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에 통보(서식 7)

-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정유통행위가 발생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보장시설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과 협조하여 합동점검 실시
-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정부양곡 매입자격 제한 (시설 담당부서)
  - 1차 위반 시 : 매입자격 제한 1개월, 2차 : 3개월, 3차 : 6개월
  -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적용

## 9. 기 타

- 부정유통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고, 부정유통 신고·고발 포상금제 실시
  - 지정용도 외 정부양곡 사용, 처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지정용도외 사용·처분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서식 4>

## 정부쌀 공급신청서

1. 보장시설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월평균 급식인원			

2. 정부쌀 공급요청량( 월)

전월까지 수입량 누계	사용량 누계	잔 량	금회신청량	급식예상인원
kg	kg	kg	kg	명

<서식 5>

## 보장시설 수용인원현황

단 체 별	계	기초생활수급자 (명)	비수급자 (명)	비 고

<서식 6>

**보장시설 정부쌀 수불대장**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	--	-----	--	------	--

월 일	구입량(kg) ①	급식횟수	급식인원	사용량(kg) ②	잔량(kg) ①-②
월 별					
누 계					

<서식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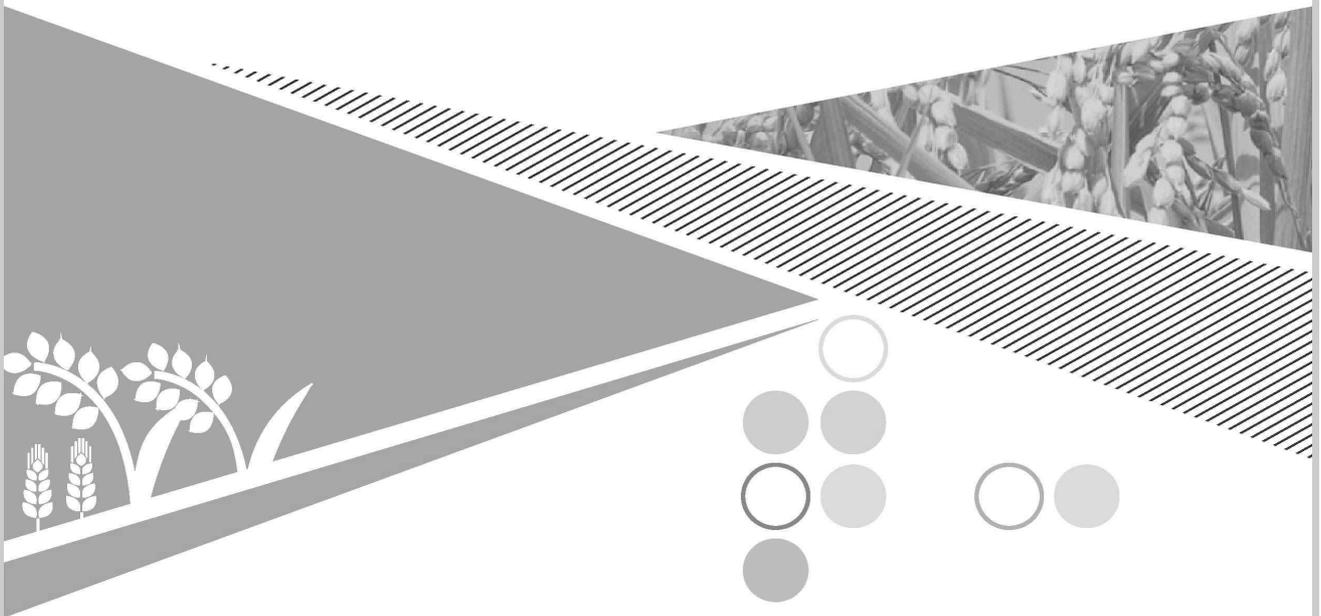
**보장시설 정부쌀 공급량(   년   월)**

시·도(시·군)	공급시설수(개소)	공급량(kg)	비 고

※ 농관원 사무소 통보시에는 보장시설별로 정부쌀 공급량을 통보



## V. 경로당용





## 1. 양곡의 용도 : 공공용(경로당용)

## 2. 공급대상

-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
  - ※ 의무적으로 모든 경로당이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 신청서를 받아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경로당에 지급

## 3. 공급연산 및 가격

- 공급연산 : 2019년산 일반쌀
- 공급가격 : 50,090원/20kg(지대)

## 4. 공급단량

- 공급 단량 : 20kg 지대

## 5. 공급절차

### ■ 수요량 파악(읍·면·동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 읍·면·동에서 매월 15일까지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양곡공급 신청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

###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납부(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17일까지)하여 정부양곡담당부서에 수요량 및 명단 제출(18일까지)
  - ※ 정부양곡담당부서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송부 : 19일까지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양곡대금 입금(매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정부양곡담당부서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납부하고 정부양곡담당부서에 내용 통보

■ 양곡 매출지시(시·군·구 정부양곡담당부서, 매월 20일 경)

- 시·군·구(또는 시·도) 정부양곡담당 부서는 대금 입금여부 확인 후 정부양곡 매출 지시
- ※ 정부양곡담당부서는 매월 매출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 배달물량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택배회사 차량에 실어주는 조건으로 택배회사에 인도
- ※ 노인복지담당부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시·군·구 정부양곡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읍·면·동에도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6. 민원처리

- 양곡품질 민원 발생 시 양정부서는 해당 민원인에게 공급된 쌀의 도정일, 창고입고일, 창고출고일(택배업체인수일), 민원인이 수령한 일자리를 우선 확인
- 창고출고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 후 민원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택배관리부서인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처리토록 통보
- 기한 내 배송된 경우 해당 쌀의 품질상태 확인 후 이상이 있을 경우 교환 조치
- \* 품질확인 시 필요할 경우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협조 요청

7. 기 타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출(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

참고 >>

2020년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계획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2020년 정부양곡비 지원방법

□ 개요

- 지원대상 : 정부양곡 구입 희망 경로당
  - ※ 정부양곡 구입 희망 경로당 신청서 받아 지급
- 공급가격 : 2019년산 정부양곡 국산쌀(20kg(지대) 기준, 50,090원)
  - ※ 2020년도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96호, 2019.12.31.) 참조
- 구매량 : 경로당별 월 20kg 1포대를 기준으로 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당별 차등지급 가능
  - ※ 읍면 지역 7포대, 동 지역 8포대 이내
- 공급방식 : 자체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주희망나르미)이 직접 배달

※ 공급기관 지정 시 정부재정사업 자활일자리 연계 추진을 위하여 양곡 배송을 시·군·구가 지정하는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 위탁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및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 업무처리 절차



① 수요량 파악(읍·면·동 노인복지 담당공무원)

- 관할 경로당에 정부양곡 구입신청 안내문 발송
- 양곡구입을 원하는 경로당의 신청서 접수 및 대장관리
- 신청결과를 취합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제출

② 양곡수요 통보 및 양곡대금 입금(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하여 양정담당부서에 수요량 및 명단 제출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양곡대금을 입금

③ 양곡매출 지시(시·군·구 양정담당부서)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부서는 대금 입금여부 확인 후 정부양곡 매출 지시

④ 택배배달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양곡인수 후, 해당 시군구내로 한정하여 공급희망지로 배달

□ 세부집행 절차

○ 수요량 파악(읍·면·동 노인복지 담당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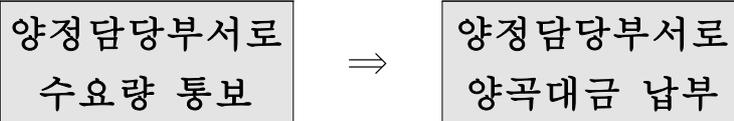


- 경로당에 정부양곡 구입신청을 위한 안내문 발송

※ 신청기간, 양곡신청 서식 등 안내

- 읍·면·동에서는 양곡구입 신청자로부터 양곡공급 신청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수요량 및 양곡대금을 시·군·구 노인복지담당 부서에 제출(매월 15일까지)
- 읍·면 지역은 5,6월 및 9,10월 등 농번기를 제외한 희망 월에, 동지역은 희망 월에 지급되도록 신청
- 정부양곡 미신청시에도 신청서 징구(맨 하단에 신청하지 않음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조치)
  - ※ 서식 <2-1>, <2-2> : 경로당 양곡신청서식 예시
  - ※ 경로당명, 주소, 연락처, 신청량(20kg 기준 포), 기타 택배에 필요한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
- 경로당 정부양곡신청 관리대장 <서식1>을 작성하여 별도 관리
  - ※ 붙임 1 : 양곡신청 경로당 관리대장

○ 수요량 통보 및 양곡대금 납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각 읍·면·동 수요량을 취합 (매월 17일까지)하여 양정담당부서에 수요량 및 명단(경로당명, 주소, 연락처 포함) 등을 통보(매월 18일까지)
- ※ 농정과에서 양곡대금 납입고지서를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송부 : 19일까지

-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서 정부양곡 구입을 신청한 경로당의 양곡대금 입금(매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양곡담당부서에서 발행한 납입고지서에 의해 양곡대금을 납부하고 농정과에 해당 내용 통보

○ 양곡 매출지시(시·군·구 양정담당부서, 매월 20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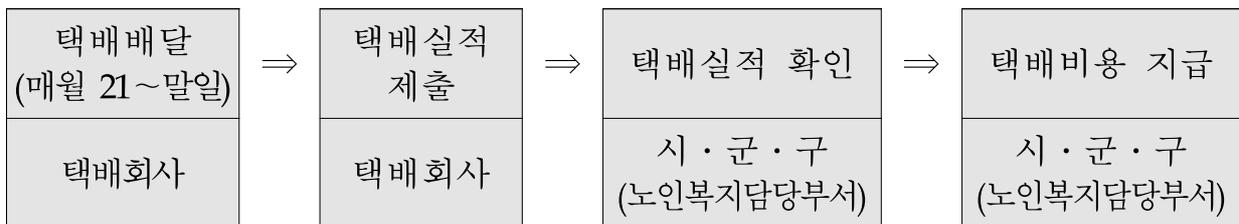
- 시·군·구(또는 시·도) 양정담당 부서는 대금 입금여부 확인 후 정부양곡 매출 지시

※ 양정담당부서는 매월 매출실적을 농식품부로 보고

- 배달물량을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에서 택배회사 차량에 실어주는 조건으로 택배회사에 인도

※ 노인복지담당부서는 택배회사명, 전화번호 등을 시·군·구 농정과에 통보하고, 읍·면·동에도 통보하여 업무에 참고토록 조치

○ 택배 배달 (매월 21~말일까지)



- 택배회사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도정공장에서 양곡을 인수하여 경로당에 양곡배달(21일 ~ 말일까지)

※ 원칙적으로 가공공장에서 양곡을 인수받은 후 5일 이내 배달

※ 다만, 도서지역 등 배달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지역은 10일 이내 배달

- 택배회사는 경로당에 배달하고 수령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제출
- 택배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달기한 내 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에 즉시 통보
- 읍·면·동에서 경로당으로부터 배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로 통보하고, 노인복지담당부서는 택배회사에 확인하여 조치

#### □ 행정사항

- 경로당에서 조리행위를 하는 경우, 안전하게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급수대, 싱크대, 배연시설 등)를 갖추고, 화재·급식 위생관리 등 안전사고 방지 유의
- 공급되는 정부양곡을 지정된 용도외로 부정유통(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유의하도록 양곡신청 안내문 발송시 사전 고지



< 서식 2-1 >

##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동지역)

○ ○ ○ 시·군·구청장 귀하

2020년 경로당 정부양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월	수요량	신청 유무	비 고
1월	20킬로, 1포대		
2월	20킬로, 1포대		
3월	20킬로, 1포대		
4월	20킬로, 1포대		
5월	20킬로, 1포대		
6월	20킬로, 1포대		
7월	20킬로, 1포대		
8월	20킬로, 1포대		
9월	20킬로, 1포대		
10월	20킬로, 1포대		
11월	20킬로, 1포대		
12월	20킬로, 1포대		
계		포	

※ 신청월에 ○, X로 표시

- 경로당명 :
- 경로당 주소 :
- 경로당 연락처 :
- 기타 배달시 참고사항 :

2020. ○. ○.

○ ○ ○ 경 로 당 회 장 (인), 서명

< 서식 2-2 >

## 경로당 정부양곡 신청서(읍면지역)

○ ○ ○ 시·군·구청장 귀하

2020년 경로당 정부양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월	수요량	신청유무	비 고
1월	20킬로, 1포대		
2월	20킬로, 1포대		
3월	20킬로, 1포대		
4월	20킬로, 1포대		
7월	20킬로, 1포대		
8월	20킬로, 1포대		
11월	20킬로, 1포대		
12월	20킬로, 1포대		
계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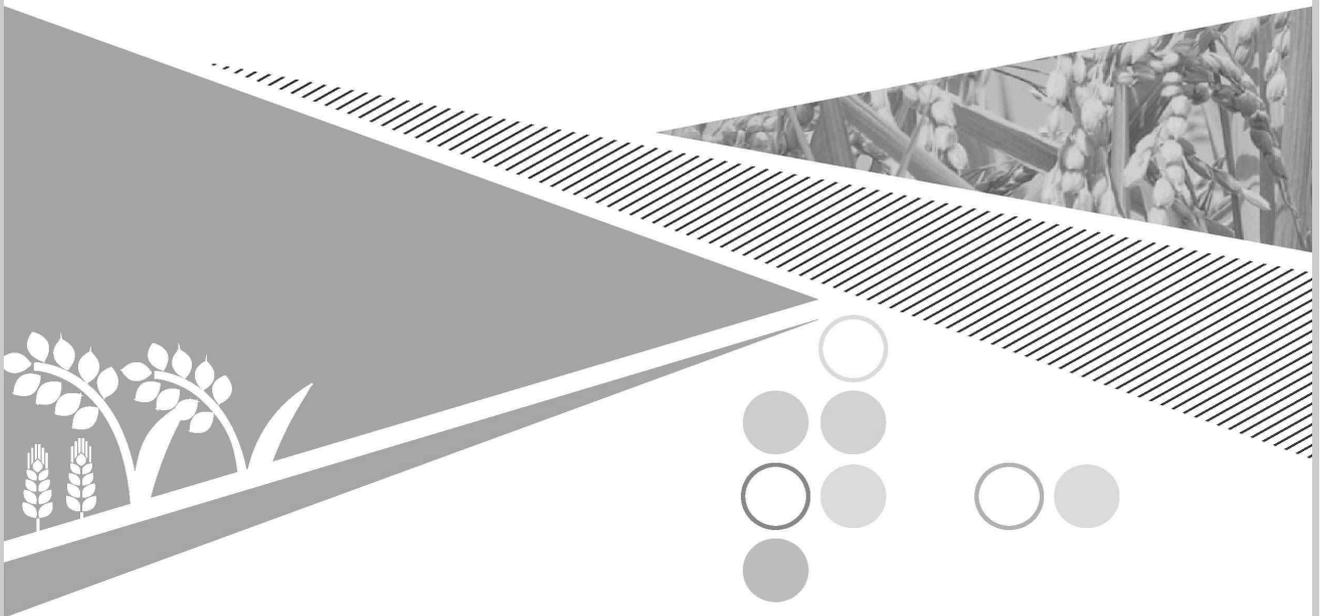
※ 신청월에 ○, X로 표시

- 경로당명 :
- 경로당 주소 :
- 경로당 연락처 :
- 기타 배달시 참고사항 :

2020. ○. ○.

○ ○ ○ 경 로 당 회 장 (인), 서명

## VI. 무료급식용





## 1. 목 적

- 결식아동·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의 결식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무료 급식단체에 정부 쌀 할인 공급으로 극빈층의 최저 생활보장

\* 관련문서 : 식량정책과-2986('11.12.1.)

## 2. 공급대상

- 결식아동·노인, 노숙자 등 극빈층을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무료 급식을 하고 있는 무료급식단체(개인·단체·기관), 다만 정부로부터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무료급식단체는 제외

- 결식아동 : 집단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기타급식소)
- 결식노인 : 집단급식소(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등)
- 노숙자 : 쉼터, 상담보호센터, 무료집단급식센터 등

\* 일반음식점, 도시락, 주·부식재료, 식품권 업소와 종교시설 내에서 종교행사 참석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최근(지정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급식을 실시해 온 무료 급식단체,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공급대상자 신청 및 지정

- 정부쌀을 공급받고자 하는 무료급식단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급 대상자 지정을 신청(사회복지부서에 신청, 서식8)

- 읍·면·동에서 접수하여 지정요건을 확인한 후 시·군·구로 송부

-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단체의 요건을 심사하고,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 정부 쌀 공급대상자로 지정(사회복지부서에서 지정, 서식9)

#### 4. 양곡의 용도지정 : 공공용(무료급식용)

#### 5. 공급량 기준

- 무료급식단체의 신청량을 기초로 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이 무료급식단체의 급식인원을 점검하여 공급량 결정
- 무료급식인원 1인 1식당 : 180g
  - 1일 1식을 기준으로 하되 결식아동은 1일 2식, 재학쉽터는 1일 3식
  - \*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 6. 공급기간 : 연 중

- 공급주기 : 월 단위로 공급

#### 7. 공급연산 및 가격

- 공급연산 : 2019년산 일반쌀
- 공급가격 : 6,250원/20kg

#### 8. 정부쌀 공급 절차

- 지정된 무료급식단체는 매월 10일까지 정부쌀 월별 공급요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 확인(무료급식인원, 공급요청량의 적정여부, 전월 구입량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서식10)
- 시장·군수·구청장은 월별 공급요청서에 대한 확인을 거쳐, 매월 20일까지 무료급식 단체(공급물량 및 가격, 주소 등)별로 물량을 결정하여 공급(사회복지부서에서 양정부서에 공급요구)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의 인수·인도 절차>

- 시(市)에서 자치구로 대상단체 명단통보→자치구는 무료급식단체별로 공급통지서를 발급(부서장 확인)하여 단체에게 통보→공급통지서 지참 창고에서 수령
- 인도지시서는 시(市)에서 발급하여 창고로 통보
- 무료급식단체는 양곡공급통지에 의거 지정창고에서 창고주가 운송 차량에 실어주는 조건으로 인수

## 9. 사후관리

- 무료급식단체는 무료급식용 정부쌀 수불대장(구매량, 사용량, 잔량, 급식 인원 등, 서식11)을 비치하고 대장 작성
  - 읍·면·동장은 월 1회 이상 급식인원 및 수불대장을 점검하여 월별 신청량의 적정여부 판단
- 시장·군수·구청장(양정부서)은 매월 20일까지 무료급식단체 지정현황 및 정부쌀 공급량을 시·도를 경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이하 '농관원'이라 한다)에 통보(서식12)
- 시장·군수·구청장(복지부서)은 부정유출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단체를 대상으로 농관원과 협조하여 합동점검 실시
  - 합동 점검 시에는 당해 시·군·구의 양정부서도 참여
- 수불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무료급식단체에 대하여는 위반횟수 및 위반정도에 따라 처분(양정부서)
  - 1차: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공급중단

## 10. 기 타

- 부정유통 시 양곡관리법에 따라 처벌하고, 부정유통 신고·고발 포상금제 실시
  - 지정용도 외 정부양곡 사용, 처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지정용도의 사용·처분한 자를 신고하는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서식 9>

## 공급자(무료급식단체) 지정승인서

1. 단체명 :

2. 대표자 :

3. 주소(소재지) :

- 상기업체는 「무료급식용 정부 쌀 공급요령」에 의거 구호용 쌀을 공급받는 무료급식단체로 지정승인을 합니다.
- 승인조건 : 지정된 단체에서는 공급받은 정부 쌀에 대하여는 무료급식 용도로만 사용
- 처벌규정 : 지정용도 외 정부양곡 사용·처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년      월      일

○ ○ 시장·군수·구청장 (인)

○ ○ ○ 귀 하

<서식 10>

## 정부쌀 월별 공급 요청서

1. 무료급식 단체(개인·단체·기관) 현황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월 평균 급식인원		급식장소	

2. 정부 쌀 공급 요청량(      월)

전월까지 구입량누계(kg)	사 용 량 누계(kg)	잔 량 (kg)	금회소요량 (kg)	급식예상인원 (명)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인)

3. 읍·면·동장 확인

확 인 사 항	확 인 결 과
○ 공급대상 지정단체 여부	
○ 무료급식 인원의 적정 여부	
○ 공급 요청량의 적정 여부	
○ 전월 구입량의 적정 사용 여부	

확인자 : ○ ○ ○ 읍·면·동장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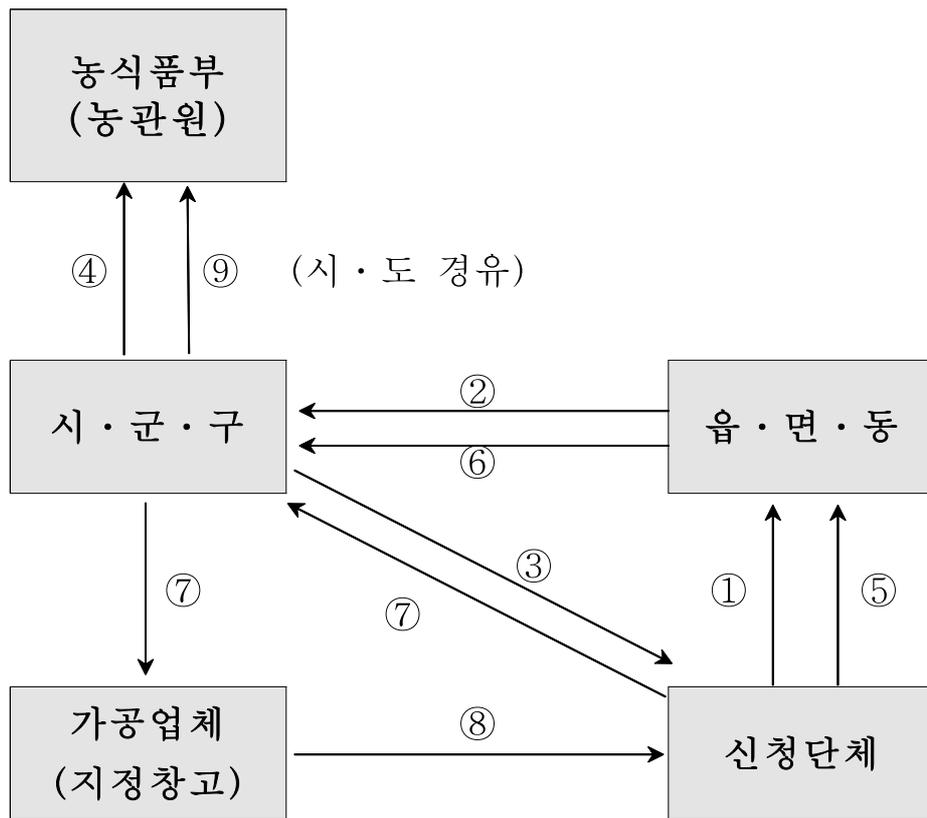
## 무료급식단체 지정현황 및 정부 쌀 공급량( 년 월)

시·도 (시·군)	지정 단체 수 (개소)	정부 쌀 공급량 (kg)	비 고
			*공급량이 많을 시는 톤으로 사용
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는 무료급식 단체별로 정부 쌀 공급량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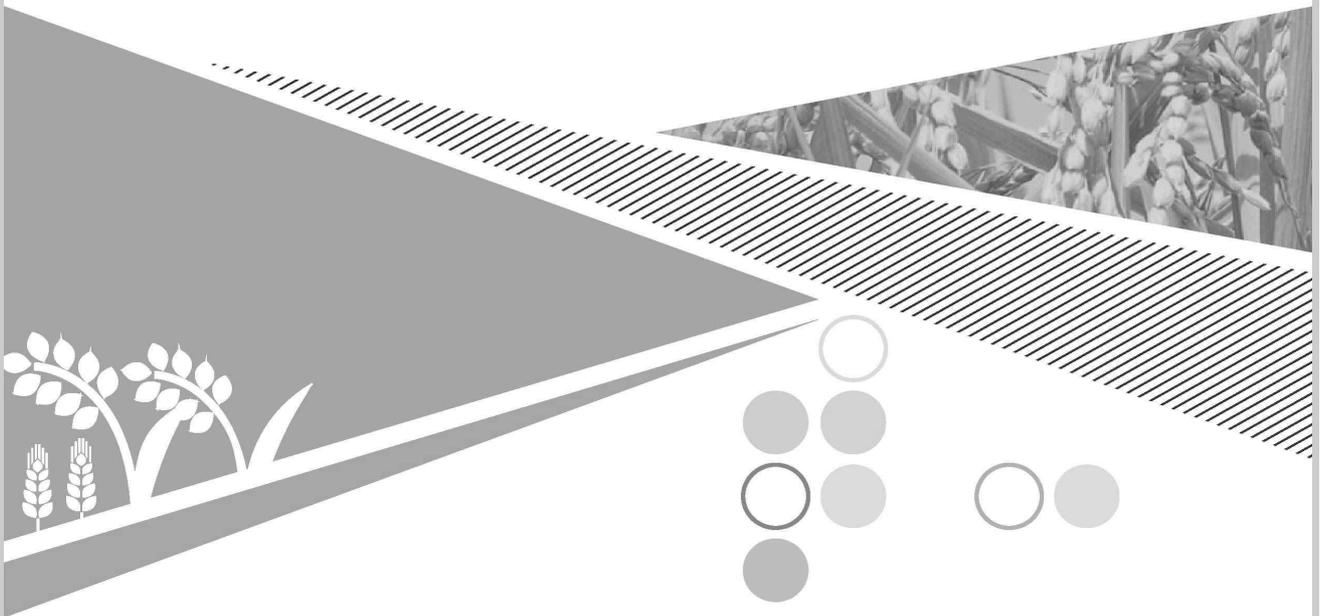
<참고>

## 무료급식단체에 대한 정부 쌀 공급체계



- ① 공급대상자 지정 신청
- ② 읍·면·동장은 지정요건 확인 후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건 심사 후 공급대상자 지정(복지부서)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상자 지정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농관원) 보고(통보)
- ⑤ 공급대상자는 월별 공급 요청서 제출
- ⑥ 읍·면·동장 확인 후 시·군·구에 제출
- ⑦ 공급대상자 양곡대금 납부 및 시·군·구 매출 지시
- ⑧ 공급대상자의 무료급식용 쌀 인도, 인수
- ⑨ 정부쌀 공급 실적 보고 (통보)

## VII. 구호용(재난·재해시)





## 1. 목 적

-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구호용으로 정부가 쌀을 저가 공급
  - 재난·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재해를 의미

\* 관련문서 : 양정 51400-527('03. 7. 7.)

## 2. 공급대상

- 재난·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히 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 재난·재해에 따라 일시적으로 취사가 어려운 피해 이재민을 위해 무료 급식하는 단체로서 시장·군수가 정부쌀 저가공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3. 공급절차

- 재난·재해의 발생상황, 피해 이재민 수(세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군수 책임 하에 정부 쌀을 공급
  - 신속한 공급을 위해 시장·군수가 피해 이재민에게 공급기준에 따라 우선 공급하고, 사후에 피해 이재민 수, 쌀 공급세대 수 및 공급물량, 대금정산방법 등 관련사항을 시·도를 경유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4. 공급곡종 및 가격

- 공급곡종 : 2019년산 일반쌀
- 공급가격 : 6,250원/20kg

## 5. 공급기준

- 피해 이재민에게는 1인당 월 10kg 기준으로 공급
- 무료급식단체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급식 이재민 1인 1식당 180g을 기준으로 공급

## 6. 대금정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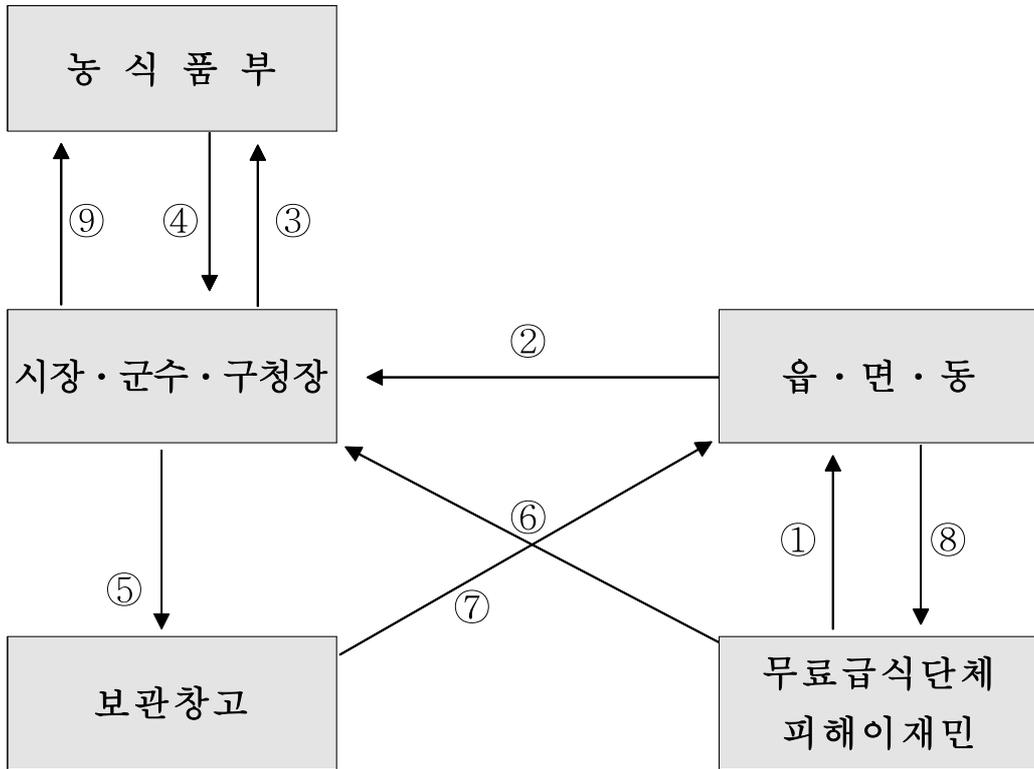
- 시장·군수가 정부쌀을 구매하되, 피해 이재민에게는 무상으로 공급
- 구매 대금은 자치단체의 자체예산으로 시장·군수 책임 하에 구매 대금을 상환 (필요 시 외상매출 가능)

## 7. 기 타

- 이재민 구호양곡은 시장·군수 책임 하에 공급 및 사후관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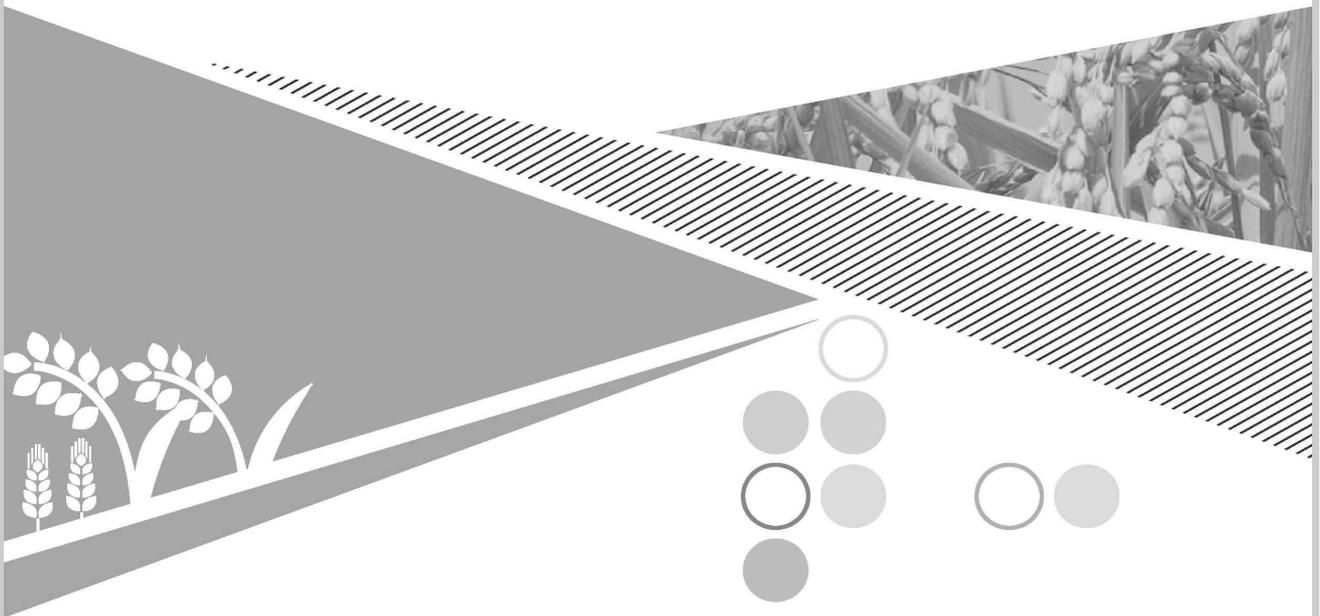
## 재난·재해 피해이재민에 대한 공급체계



- ① 피해이재민·무료급식단체의 신청
- ② 읍·면·동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공급 승인 요청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 ⑤ 가공지시
- ⑥ 피해이재민·무료급식단체의 대금납부
- ⑦ 수송업체는 읍·면·동장에 운송
- ⑧ 피해이재민·무료급식단체는 읍·면·동에서 구호용 쌀 인수
- ⑨ 구호용 쌀 공급실적 보고



## VIII. 가공용





##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가공용 쌀 공급·관리에 관한 위임·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용 쌀"이라 함은 쌀가공품 원료로 정부가 공급하는 쌀을 말한다.
2. "일반공급"이라 함은 가공용 정부관리양곡을 양곡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양곡관리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3. "특별공급"이라 함은 가공용 정부관리양곡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부관리 쌀 수급상황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급물량, 공급가격과 공급방식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4. "매입대상자"라 함은 가공용 쌀을 공급받기 위하여 매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5. "가공용 쌀 수급 관리 시스템(이하 '수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공용 쌀 수급 및 관리 업무를 전산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수탁기관"이라 함은 양곡관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용으로의 판매 업무에 대해 위탁 기관으로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용으로의 판매 업무는 매입대상자에게 가공용 쌀을 판매하는데 따른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로 한정한다.

제3조(용도) 양곡관리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정부가 가공용으로 공급하는 미곡(이하 '가공용 쌀'이라 한다)은 가공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가공용 쌀의 종류) 정부가 공급하는 가공용 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산쌀(현미, 백미) : 연산별로 구분
2. 수입쌀(현미, 백미) : 연산별, 국가별, 단립종·중립종·장립종으로 구분

제5조(위임 기관의 업무) ①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나 시장·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용 쌀의 판매 및 사후관리
2.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

②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장'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가공용 쌀의 용도외의 사용·처분에 관한 조사 등 사후관리

제6조(수탁 기관의 업무) ①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공급물량 요청
  2.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월별 공급물량 배정에 관한 사무
  3.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 추천에 관한 사무
  4.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에 관한 사무
  5.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배정물량 변경 및 점검에 관한 사무
  6. 가공용 쌀 수급현황에 대한 전산관리 및 통계분석에 관한 사무
  7.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 대한 가공용 쌀 적정사용 및 수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교육
- ② 수탁기관은 수탁업무 수행을 위해 사무처리부서, 수탁업무의 처리기간, 처리절차·기준, 서식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수급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기타 수탁업무의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사무편람을 마련하고 수탁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매입대상자 지정 등) ① 가공용 쌀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장·군수로부터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는 시·군 지회장(또는 시·도 지부장)이 지회 소속 개별업체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시·군 지회장(또는 시·도 지부장)명의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신청서와 각 호의 서류를 수탁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신고(등록)증, 제조업등록(허가·신고)증, 주류제조면허증 사본 중 택 1부(원본대조필)
2.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 발행) 1부
3. 제품제조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임차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1부
4. 제조 품목을 증명할 서류(품목신고증 등) 1부
5.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의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6. 가공용 쌀 사용 각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③ 수탁기관은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의 자격기준, 제품의 경쟁력, 시설 등을 종합 검토하고 가공용 쌀 소비능력을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수탁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기관의 장(이하 '농관원 사무소장'이라 한다)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상호, 대표자, 생산품목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장소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의 추천을 받아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변경 또는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그 변경 내역을 수탁기관과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장·군수는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 및 변경신고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매입대상자 자격제한 및 지정 취소) ① 시장·군수는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가 양곡관리법 제9조의 2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4호에 따라 매입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가 매입대상자 지정 취소를 희망하거나, 폐업으로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취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매입대상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 수탁기관,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의 구분) ① 정부관리양곡 가공용 쌀의 공급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구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수급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공용 쌀을 [별표1] 품목별 쌀가공업체 분류기준에 따른 품목별로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공급물량 예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해당 양곡연도의 쌀 수급상황과 수탁기관이 요청하는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가공용 쌀 공급물량을 예시하여야 한다.

제11조(가공용 쌀 배정 등) ① 수탁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예시된 가공용 쌀 공급물량을 제7조에 따라 지정한 매입대상자의 가공용 쌀 소비능력 등을 고려하여 매입대상자별 연간 매입한도량을 결정하고 매입대상자에 통보한다.

②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연간 매입한도량 범위 내에서 '가공용 쌀 인수계획량[별지 제6호 서식]'을 "수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가공용쌀 매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수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가공용 쌀 인수계획량에 의거 ‘월별 가공용 쌀 배정량 확인서[별지 제7호 서식]’를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에게 발급하고, 그 내역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가공용 쌀 판매 절차 등) ① 제9조의 특별공급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절차와 방법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② 제9조의 일반공급의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매입대상자는 “수급관리시스템”에 구매신청내역을 입력하고 가공용 쌀 구매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발급받아 시장·군수에게 구매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제11조 제3항의 “월별 가공용 쌀 배정량”으로 매출을 결정하고 가공지시를 하거나, 가공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매입신청자에게 월 가공용 쌀 구매 대금 납부를 고지한다.

3. 수탁기관은 월별 가공용 쌀 배정량을 기준으로 매입대상자에게 당해 월의 가공용 쌀 배정수수료를 고지한다.

4. 시장·군수는 가공용 쌀 구매대금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가공용 쌀 인도지시서를 발급한다.

5.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대금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는 인도지시서에 따라 가공용 쌀을 인수한다.

6. 시장·군수는 매월말일 기준으로 해당 월의 매입대상자별 가공용 쌀 매출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7. 수탁기관은 반기별로 실 구매량을 기준으로 수수료 납부 차액을 정산한다.

③ 시장·군수는 가공용 쌀을 매입대상자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가공용 쌀 공급 단량은 40kg/포대, 1톤/포대로 한다.

제13조(가공용 쌀의 외상판매) ① 시장·군수는 양곡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외상 판매하는 경우 외상 판매 기간은 3개월로 하고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상판매에 따른 납부기한이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12월 20일로 한다.
- ③ 가공용 쌀을 외상으로 구매하려는 자는 제12조 제2항 제4호의 대금납부에 갈음하여 외상구입대금에 상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구매 신청자에게 가공용 쌀 인도지시서를 발급하고, 구매신청자는 인도지시서에 따라 가공용 쌀을 인수한다.

제14조(가공용 쌀의 사후관리) ①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는 정부로부터 구입한 가공용 쌀을 가공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매입한 가공용 쌀의 구매·사용 및 제품 생산내역을 "수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농관원장은 가공용 쌀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대상자 세부 점검요령"을 정하여 운영하고, 반기별 1회 시장·군수와 합동으로 매입대상자의 가공용 쌀 유통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매입대상자의 가공용 쌀의 적정 사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고,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시장·군수와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가공용 쌀의 소비능력 확인) ① 매입대상자 지정을 신청하거나, 매입대상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설 개선 등으로 가공용 쌀 소비능력의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수탁기관에 제출하여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신청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 신청을 받으면 현지 실사를 통해 실제 소비능력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매입대상자 교육) 수탁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정한 매입대상자를 대

상으로 연 1회 이상 가공용 쌀의 적정 사용 및 수급관리시스템 이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수급관리시스템 운영) ① 수탁기관은 가공용 쌀의 공급 및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수급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가공용 쌀의 판매 및 사후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수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동 규정 제7조에 따른 매입대상자 지정관리업무
2. 동 규정 제12조에 따른 가공용 쌀 판매 및 실적관리 업무
3.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한 업무

③ 농관원장은 가공용 쌀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수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사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18조(전자문서의 작성) ① 이 지침에 따른 대장 및 보고서 등 문서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는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19조(행정사항 등) ① 농관원장은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가공용 쌀 유통실태 점검 결과를 받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반기별로 다음달 15일까지 가공용 정부관리양곡 공급실적과 제품 생산·판매실적을 업종별·시도별로 집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4조 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받기 다음달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이 지침의 반기는 양곡연도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상반기 :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 하반기 :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별표1]

## 품목별 쌀가공업체 분류기준(안)

구분	생산품목			분류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당업체
식료품·음료 제조업	곡물 가공품 제조업 (1061)	곡물제분 (쌀가루)	건식미분	건식쌀가루	건식으로 단순 분쇄한 쌀가루 생산 업체
			습식미분	습식쌀가루	쌀을 세척·침지하는 공정을 거쳐 습식으로 분쇄하고 건조하여 상온유통이 가능한 쌀가루를 생산하는 업체
			알파미분	활곡, 팽화미분, 볶음쌀가루 등	호화된 형태의 쌀가루를 생산하는 업체
			혼합분말	프리믹스 및 반죽 제조 등	혼합분말 제품 생산 업체
		곡물제분 (선식류)	선식류	미숫가루, 선식류 등	선식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기타 곡물 가공품	가공쌀	파보일드(올벼)쌀, 건조찐쌀 등	쌀 원곡을 재료로 하여 쌀의 형상이 유지되는 제품으로 찐쌀·퍼핑 설비 등을 갖춘 업체
			빵튀기	쌀튀밥	쌀 모양의 인조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인조쌀	인조쌀, 마카로니	누룽지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누룽지	누룽지, 누룽지파자, 누룽지쌀떡 등	쌀 시리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시리얼류	시리얼	전분 분리, 추출 설비를 갖춘 업체
	전분제 품 및 당류 제조업 (1062)		전분	전분	쌀전분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1071)	떡류	떡볶이	떡국, 떡볶이 등	떡볶이떡 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
			전통떡	설기떡, 송편, 증편, 떡케익 등	전통떡류 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
		빵·과자류	쌀빵	식빵, 카스테라, 케익 등 빵류	쌀빵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쌀스넵	쿠키, 비스킷, 건빵 등	쌀스넵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1073)	면 류	한과	강정, 유과, 산자, 약과, 디식 등	전통 한과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조미료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1074)		국수, 파스타 등 건면류, 라면 등	건면, 생면, 숙면, 우동, 라면, 파스타 등 면류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업체	
			조미료	현미식초, 미림 등	조미료 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기타 식료품 제조업 (1079)	가공밥류	장류	고추장, 된장, 쌈장, 간장 등	장류 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소스류	쌀 첨가소스 등	소스 생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포장밥			무균포장밥, 냉동볶음밥, 레토르트밥 등	유통가능한 용기에 포장한 제품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발효주 제조업 (1111)	주류	건조밥	동결건조밥, 알파밥 등		
		수프·죽류	유동식 스프, 죽, 미음 등		
		두부류	두부·묵	쌀두부·묵 등	
		탁주	쌀막걸리	탁주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주류제조업체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112)	주류	약주	약주	약주 제품 생산설비를 갖춘 주류 제조업체	
		청주	청주	청주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맥주	맥주	맥주생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비알콜음료 (1120)	음료	소주	증류식, 희석식 소주	소주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쌀음료	쌀음료	음료제조설비를 갖추고 영업하는 업체	
기 타	식료품음료 제조업 중 1061, 1062, 1071, 1073, 1074, 1079, 1111, 1112, 1120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분류에 해당하는 품목 중 대·중소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쌀제품			쌀을 원료로 한 제품 생산 업체	
그 외 제조업	쌀을 원료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다른 식료품·음료 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별지 제2호 서식]

##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 의뢰서

※ 아래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내역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팩 스		
	생산품목					
쌀 가공제품 생산내역	일련번호	제품명	쌀함량(%)	쌀소비량 (톤)	제품생산량 (톤)	생산량/투입량 (수율, %)
	1					
	2					
	3					
	4					
합 계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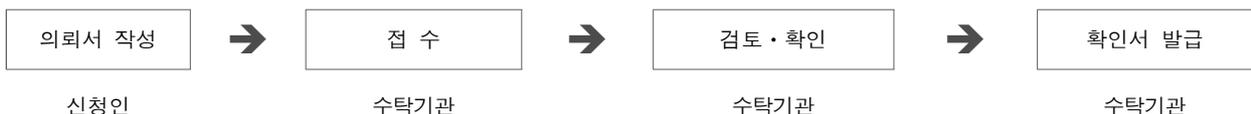
수탁기관 귀하

첨부서류	생산품목별 식품제조품목신고증 사본 각1부
------	------------------------

### 작성 방법

1. '생산품목'란은 쌀 소비능력 확인을 위한 가공제품생산내역과 일치하도록 적습니다. 다만, 생산품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2. '쌀 가공제품 생산내역'란은 쌀 소비량 및 제품생산량을 적습니다. 다만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상량을 적습니다.

### 처리 절차



[별지 제3호 서식]

## 가공용 쌀 사용 각서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은 가공용 쌀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매입대상자 지정취소 및 공급중단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다 음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인은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에서 규정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li> <li>2. 공급받은 가공용 쌀은 법에서 규정한 용도대로 사용하겠으며, 타 용도로는 절대 유출하지 않겠습니다.</li> <li>3. 본인은 지정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관계서류를 제출하겠으며 지침에 의거 보고·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li> <li>4. 본인은 이 지침에 따르는 사후관리 사항에 대하여 생산시설확인, 장부의 제출 또는 열람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협조하겠으며, 필요한 지시·감독에 따르겠습니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각서인)</p> <p style="text-align: center;">업 체 명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대 표 자 : _____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시장·군수 귀하</p> <p style="text-align: left; margin-top: 20px;">수탁기관장</p>

[별지 제4호 서식]

##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 변경 신고서

※ 아래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업체내역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팩 스
변경사항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상 호		
	주 소		
	대표자		
	주 소		
	생산품목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 제5항에 따라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내역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추천기관확인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 제5항에 따라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 지정내역 변경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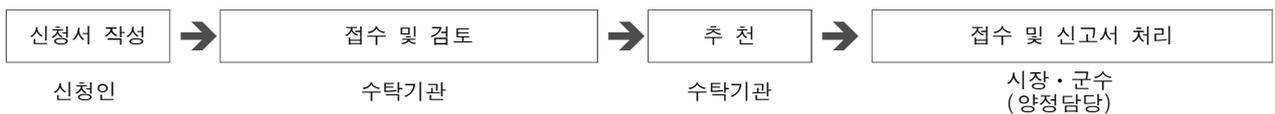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장 발행). 제품제조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임차건물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	---

### 작성방법

1. '변경사항'란은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변경 전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 가공용 쌀 소비능력 확인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 스

쌀 소비 능력						
제품명						합 계
월소비능력(톤)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5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공용 쌀 소비능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직인)

[별지 제6호 서식]

## 가공용 쌀 인수계획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시군	고유번호

### 월별 인수계획량(톤)

분기 월별 곡종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월	12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당사가 배정받은 양곡연도 배정량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용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본인 (인)

### 수탁기관장 귀하

#### 작성 방법

1. 제11조 제1항에 따른 연간매입한도량 및 월소비능력 범위 내에서 월별 인수계획량 입력
2. 곡종은 국내산(연산), 수입쌀은(단립종, 중립종, 장립종)으로 기재

#### 처리 절차



[별지 제7호 서식]

## 월별 가공용 쌀 배정량 확인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관할시군	고유번호
사용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 월 배정 내역		
공 급 곡 종	구분	배정량(톤)
	백미, 현미	
(합 계)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1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양곡연도    월 배정량 확인서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직인)

[별지 제8호 서식]

## 가공용 쌀 구매 신청서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팩 스

사용기간

가공용 쌀 구매 신청 내역					
①구매품종	②구분 (현미, 백미)	③단량 (40kg, 톤백)	구매신청량		비 고
			포대수	중 량(톤)	
합 계					

가공용 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공용 쌀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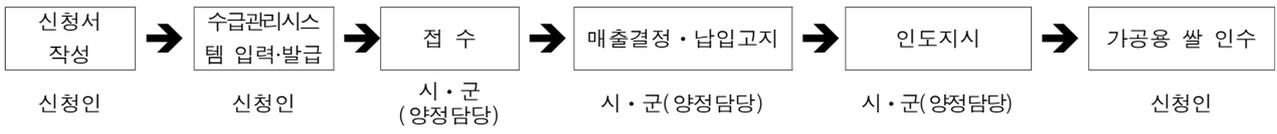
(인)

**시장·군수 귀하**

### 작성 방법

① 구매품종은 국산(연산별) 또는 수입산(단립종·중립종·장립종)으로, ②구분은 현미 또는 백미로, ③단량은 40kg/포대 또는 1톤/포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참고 >> 정부관리 양곡 가공용과 사료용 외상판매 절차

(농식품부 식량정책과-4004. '13.11.29)

### 1. 추진배경

- 외상판매 대상 정부관리 양곡 확대(양곡관리법 시행령 제 11조 제1항 제6호 신설)
  - 정부관리 양곡을 외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용도에 가공용과 사료용을 추가
  - 정부관리 양곡을 가공용이나 사료용으로 매입하는 기업이 대부분 영세하여 원료 매입과 판매수입 발생시점 차이로 인한 현금 유동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

### 2. 현황 및 추진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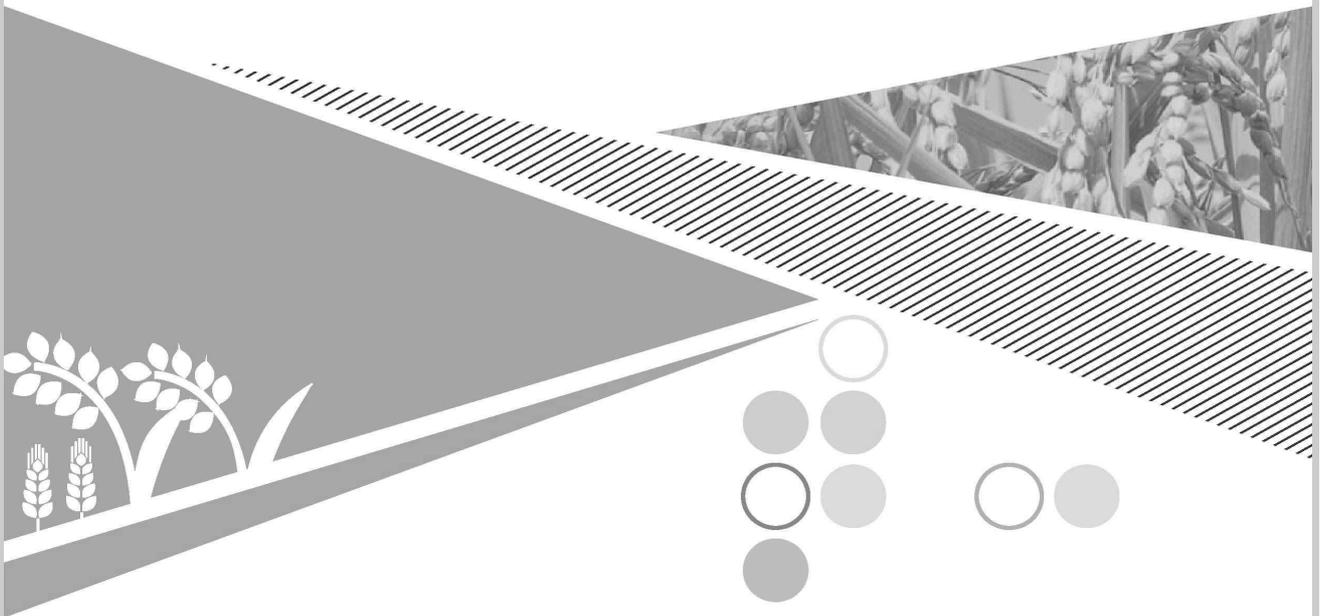
- 정부양곡 판매대금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 출력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자가 국고취급은행을 통해 현금 등으로 납부
-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정부관리 양곡 외상판매를 허용하되 양곡판매대금의 연체 및 미납부액으로 인한 양특회계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양곡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아 최장 3개월간 외상공급

### 3. 처리절차

처리 절차	수행주체	주요 내용
신청서 제출	신청인	·가공용(사료용) 쌀 구매신청서
접 수	시·군 (양정담당)	·신청서 접수
매출결정·납입고지	시·군 (양정담당)	·d-brain에서 출력 납입고지
인도지시	시·군 (양정담당)	·납부기간 내 현금납부 : 납부 확인 후 인도지시 ·납부기간에 현금납부를 하지 않고 외상구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① 신청인의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제출받음 ② 최장 3개월 납부기간 재고지(지급보증서 보증기간 확인) 후 인도지시
가공용(사료용) 쌀 인수	신청인	· 정부관리양곡 인수
납부일자 납부확인	시·군 (양정담당)	·시,군 양정담당자는 납부기한 10일전에 납부기한 일자 재 안내 ·납부기한 내 미납 시 해당 금융기관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 Ⅸ. 주정용





## 1. 양곡의 용도 : 가공용(주정용)

## 2. 공급대상

- 주세법 제6조에 따라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를 받은 주정생산 업체로 주정용 쌀 공급계약 체결업체

## 3. 공급가격

- 공급가격 : 현미 285원/kg, 백미 323원/kg

## 4. 공급단량

- 공급 단량 : 10kg, 20kg, 40kg, 1,000kg(지대포장, P.P 포장)

## 5. 공급절차

- (신청) 주정용 쌀 사용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월별 사용할 물량을 구매 신청
  - 주정용 쌀 사용업체는 전월 5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구매 신청
  - 월별 계획물량 변경시 주정업체는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 후 조정
- (공급) 현미, 쌀은 원곡으로 공급하고, 벼는 도정 후 현미 상태로 공급
- (인수도) 인수도 장소는 지자체 등이 지정하는 정부양곡 보관창고 또는 가공공장의 문전 상차도 조건

## 6. 기 타

- 지정된 용도 외로 부정유통(시중유통, 판매 등)한 자는 양곡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함